

학생장학적금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학생장학적금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에 있어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가입대상】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유치원(어린이집 및 관인학원을 포함한다)·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.

제3조 【가입기간】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한다.

제4조 【가입금액】

이 적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0원이상이며 최고 가입한도는 1,500만원으로 한다.

제5조 【인감의 신고】

이 적금을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우체국에 거래용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. 이때, 거래용 인감은 당해 학교장의 직인 또는 학부모의 인감(서명)으로 하여야 한다.

제6조 【지급시기】

이 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였을 경우 졸업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.

1. 가입자가 상해, 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때
2. 가입자가 학교를 퇴교 또는 퇴학하였을 때
3. 생계곤란, 병원진료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7조 【계속예입의 제한】

이 적금의 예입에 있어 졸업 예정학년은 졸업년도 2월말까지의 예입에 한한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